

# 「2025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가기업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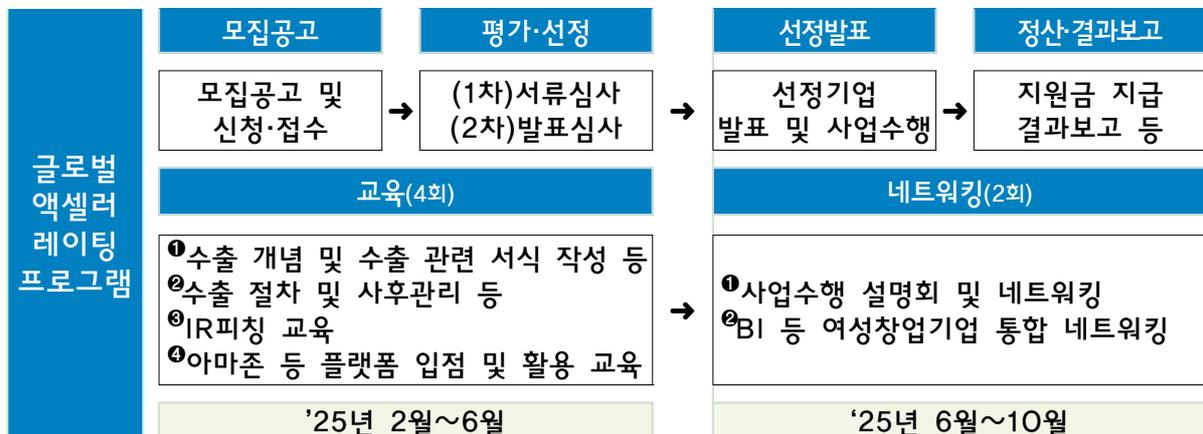
해외 시장 등 여성 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참가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여성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재단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1 모집 개요

- (목적) 해외 시장 등 여성 창업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청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교육, 네트워킹 등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문의처) 창업지원팀 Tel. 02-369-0920 / E-mail. wave@wbiz.or.kr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추진일정>



-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하며, 자기부담금(20%) 및 부가가치세(10%)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분야는 중복 신청 가능하며, 신청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중복 신청 예시: 총 10백만원 신청인 경우, (글로벌 홍보) 해외 플랫폼 3백만원, SNS 3백만원 (해외시장개척) 지식재산권 4백만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 금액	비 율		
교육 (온라인) *일정 변동가능	1회차 (4.9)	수출 개념 및 수출 관련 서식 작성 등 * (수출 개념) 수출 용어, 종류 등 / (수출 서식) 결제, 통관 및 선적	2개 이상 필수 이수	-		
	2회차 (4.10)	수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 (수출 절차) 결제, 운송 등 / (사후관리) 무역클레임, 외환 관리 등				
	3회차 (5.13)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진출 디지털 무역 교육				
	4회차 (5.14)	창업배경 및 메시지 등 명확한 의도 전달을 위한 IR피칭 교육 * IR피칭 중요성, 기본 요소, 발표 구성 설계, 발표 스킬 등				
지원 사업	수출 전문가 컨설팅	전략 수립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수출 준비 및 절차 컨설팅 등	2개 이상 필수 선택	70 개 사 내 외	
		마케팅	해외 진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등			
		기술 보호	보유 기술 지식재산권 및 IP 분쟁 대응 컨설팅 등			
		법률	해외 진출 관련 인사/노무, 무역 사기 대응 컨설팅 등			
		회계 및 관세	외환 관리 및 관세 대응 컨설팅 등			
	사업 화 지원	글로벌 홍보	수출용 마케팅 자료 제작	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IR자료 등 마케팅 비용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30 개 사 내 외
			수출용 패키지 제작	수출용 포장 패키지 디자인 및 제작비용 지원		
			해외 플랫폼 활용 지원	현지 e커머스 입점 비용 지원		
			현지 SNS 마케팅 지원	현지 SNS 인플루언서 및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 시장 개척	지식재산권 지원	해외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해외규격 인증 비용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심사인증 비용 지원 (ISO, CE, UL, CCC, JIS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부스비, 장치비, 통역비 등) *숙박비, 식비, 운임료 등 지원불가	최대 10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biz.or.kr](http://www.wbiz.or.kr))
- (신청기간) 25. 3. 24(월) ~ 25. 4. 14.(월) 18:00 신청마감  
\* 상황에 따라 연장 공고 가능
- (신청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 [붙임]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

### 【 유의사항 】

1. 수출 실무교육 4회 중 2회 이상 신청·필수 이수하여야 함
2. 신청가능 업력: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018년 4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
3.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여부 결정
4. 프로그램 선정 시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제출 필수

- (제외대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제한함

### 【 제외대상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부
4.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기업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붙임3]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고
6. 아래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 지원 등 협약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 지원 프로그램
- '24 여성창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23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지원
  - '21~'22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 '19~'20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기업화 지원

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8.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기업
9.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기업
10. 기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신청절차)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체 크
제 출 서 류	1. [양식]2025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서 - 참가 신청서, 해외진출 활동계획서, 해외진출 품목설명서, 활용계획서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input type="checkbox"/>
증 빙 서 류	2. [별첨1-1]사업자등록증, [별첨1-2]여성기업확인서, [별첨1-3]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input type="checkbox"/>
	3. [별첨2-1]국세 및 [별첨2-2]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국세 :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8. [별첨3]'23년~'24년 수출 실적 증빙자료(해당시) * 수출실적증명원 등	<input type="checkbox"/>
	4. [별첨4]'23~'24년 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또는 세무서	<input type="checkbox"/>
	5. [별첨5]'24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해당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input type="checkbox"/>
	6. [별첨6]공고일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출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7. [별첨7]공고일 현재까지 기업(제품)인증 증빙자료(해당시) * 기업인증(ISO, HACCP 등) 및 제품인증(CCC, CE 등)	<input type="checkbox"/>
	10. [별첨8]공고일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 증빙자료(해당시) * 투자계약서 등 투자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11. [별첨9]기타 심사에 참고될만한 증빙자료(해당시)	<input type="checkbox"/>

## □ (선정절차)

①사전심사	②서류심사	③발표심사	④최종선정
'25년 4월 말	'25년 5월 중	'25년 6월 중	'25년 6월 중
자격요건 미비 등 사전심사	→ 정성 및 정량 평가 (2.5배수 내외 선정)	→ 정성평가 (비대면 온라인)	→ 서류심사(30%) 및 발표심사(70%) 가중치 후 최종선정

## ① (사전심사)

- 신청자격 미비 등 자격요건 검토

## ② (서류심사)

- 참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기반 서류심사 진행
- \* 최종선정 대상의 2.5배수 내외 선정

## &lt;서류심사 가점 항목 안내&gt;

구분	가점 항목	증빙서류	비고
가점 (최대5점)	수출 상위권 국가*외 수출(5점)	수출실적 증명서 등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투자유치(5점)	투자유치 계약서 등	

## ③ (발표심사)

- 참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기반 발표심사 진행
- \* 총 10분 발표(발표 5분 / 질의응답 5분), 대표자 참여 원칙

## ④ (최종선정)

- 서류심사(30%), 발표심사(70%) 가중치 반영하여 최종선정
- \* 예비합격자 포함 1.3배수 내외 선정

## 【 유의사항 】

1. 심사 관련 증빙자료 미제출·누락시 점수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제외 대상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수출 전문가 컨설팅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li> </ul>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별 컨설팅 결과보고서(소정양식), 컨설턴트 이력서,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지급수수료양식(소정양식)</li> </ul>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비용의 경우 신청기업이 아닌, 주관기관에서 직접 집행</li> <li>컨설팅 지원은 시간당 100,000원 지원(최대 2시간*2회)</li> </ul>	
글로벌 홍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대가로 필요한 비용(해외 진출 마케팅 자료, 패키지 등)</li> </ul>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필수) : 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견적서(직인必), 비교견적서(직인必),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li> </ul>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마케팅 지원은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li> <li>*자기부담금 20%, 부가세10% 별도</li> </ul>	
해외 시장 개척	지식 재 산 권 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관련 비용</li> <li>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인증 등 관련 비용</li> </ul>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필수) : 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견적서(직인必), 비교견적서(직인必),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li> <li>지식재산권: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li> <li>시험.인증비: 시험.인증서 등</li> </ul>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시장개척 지원은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li> <li>*자기부담금 20%, 부가세10% 별도</li> </ul>	
해 외 전 시 회	정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대가로 필요한 비용(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등)</li> </ul>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필수) : 결과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 견적서(직인必), 비교견적서(직인必),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li> <li>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비 영수증,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참가확인서 등 포함)</li> </ul>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전시회 지원은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li> <li>*자기부담금 20%, 부가세10% 별도</li> </ul>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 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인정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산업표준분류	업종	비고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관련 전업종	
부동산업	68~69	부동산 임대, 중개, 장비 및 기계 임대,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업, 음식점업, 주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 음식점업 제외
무도장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4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이용 및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	산업용 세탁업 제외

### < 산업표준 분류 >

- 55 숙박업(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일반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음식업,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64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69 임대업;부동산 제외(운송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